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8
----------	----

제출년월일 : 1998. 11. 24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표준안에 따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1년씩 단축하되,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1998. 9. 19, 법률 제5588호)개정전의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 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 함. (안 부칙 제2항)

나.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제도를 폐지함.

다.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에 의하여 면직할 수 있는 규정을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제1호)

라. 별정직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를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변경함. (안 제11조)

마. 병역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로 하고, 휴직의 효력 규정을 신설함. (안 제11조의 2·3)

3. 관계법령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나.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별정직조례개정 표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 제1호중 “6월이상”을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으로 한다.

제11조중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를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1998. 9. 19, 법률 제5568호)개정전의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근무상한연령) ①~②(생략)</p> <p>③제1항의 근무상한연령은 임용권자가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사정, 당해 별정직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당해 별정직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 연장 신청기간·절차 및 신청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장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8조(근무상한연령) ①~②(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p>제10조(직권면직)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p> <p>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p> <p>2. ~ 4.(생략)</p>	<p>제10조(직권면직)----- ----- -----</p> <p>1. ----- 부 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 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p> <p>2.~ 4(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다만, 즉결심판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p>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2. ----- -----
<p><신 설></p>	<p>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p>
<p><신 설></p>	<p>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 무에 종사하지 못한다.</p> <p>②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 을 명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p>